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601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발 의 자: 박 석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동길, 강석주, 김경훈,
김규남, 김영철, 김재진,
김태수, 김형재, 남창진,
문성호, 박영한, 송경택,
신복자, 유정인, 윤기섭,
이병윤, 이봉준, 임춘대,
장태용, 최민규, 최진혁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건축계획, 굴토, 구조, 해체 등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확대되며 심의 안건은 증가하였으나, 현행 조례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규모를 「건축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한 ‘150명 이하’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‘60명 이내’로 제한하고 있음.
- 위와 같은 제한으로 여러 자치구에서 다양한 분야의 안건 처리에 적합한 건축위원 선정이 어렵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바, 합리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상한 인원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 규모를 최대 100명 이내로 확대함(안 제5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“60명”을 “10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(이하 “구 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</p> <p>1.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<u>6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다만,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2. ~ 6. (생략)</p>	<p>제5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100명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